

# 기업가정신센터 운영규정

□ 제정 : 2017. 1. 1.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창업지원단(이하 “창업지원단”이라 한다.)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학생, 교직원,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업가정신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사업)

센터는 이 규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기획
2. 창업휴학, 창업대체학점 인정제, 창업학점교류제, 창업 장학금 등 창업 관련 학사업무 운영
3.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등 창업자 대입특별전형 도입 및 운영
4. 창업 강좌개설관련 학사제도의 운영
5. 그 밖에 창업기반조성교육 및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와 관련한 업무

## 제 2 장 조직 및 운영

### 제3조 (조직)

센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

2. 행정팀
3. 연구원 및 조교
4. 운영위원회

## 제4조 (센터장)

- ① 센터장은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직무전반을 통할한다.

## 제5조 (행정팀)

- ① 행정팀장은 본교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행정팀 내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.

## 제6조 (연구원 등)

센터 운영의 필요에 따라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.

# 제 3 장 운영위원회

## 제7조 (설치 및 운영)

창업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그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## 제8조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2.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

## 제4장 재 정

### 제9조(재원)

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기관의 출연금 및 지원금
2. 본교의 지원금
3. 센터사업에 관하여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지원금
4. 기타 수입금

### 제10조(회계)

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창업지원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11조(예, 결산 및 사업)

센터장은 센터의 예산과 사업계획서, 결산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## 제 5 장 기 타

### 제11조(세부사항)

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